2018. 9. 3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약관-021호(2024.03.08)
2019. 3.16개정

# 「연금하나 통장」특약

**제1조 약관의 적용**

「연금하나 통장」(이하 "이 예금" 이라 한다)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,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**제2조 예금과목**

이 예금의 과목은 「저축예금」으로 합니다.

**제3조 가입대상**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,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**제4조 가입금액**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

**제5조 이자지급**

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 (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), 최초 예금일(또는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(또는 지급일)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, 아래 기준일에 셈하여 익일(이하 '원가일')에 원금에 더합니다.

- 이자계산 기준일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
②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, 전환일부터 전환후 예금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**제6조 우대금리 적용**

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아래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,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.9%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.

1.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
2.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: 주택연금, 연금신탁, 연금펀드
3. 기타연금 :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

**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**

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항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)

**1. 연금하나 우대** : 이 예금에 제6조 제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시, 수수료우대 Ⅰ(횟수제한 없음) 및 수수료우대 Ⅱ 총합 월10회 제공

**2.『하나머니』우대** : 하나금융그룹의『하나머니』회원인 경우 수수료우대 Ⅰ 총합 월10회 제공

(**수수료우대 Ⅰ**)

-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후 현금인출수수료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

- 하나은행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면제
-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

**(수수료우대 II)**

-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수수료 면제(주1)
-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

(주1)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,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하며,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 제휴CD기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는 수수료면제가 제공되지 않음.

② 이 예금 신규 가입후 다음달까지는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를 총합 월10회 제공합니다. 단, 가입월에 제7조 제1항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후 다음달부터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적용합니다.

③ 다른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시, 전환하는 달의 수수료면제횟수는 기존 상품의 수수료면제 잔여횟수를 적용하고, 익월부터 이 예금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에 따른 면제혜택을 제공합니다.

**제8조 상품전환**

저축예금인 경우,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

부 칙

1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2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2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2년 9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3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4년 4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